

결 정

-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1
- 언 론 사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1505호
대표이사 장창희
- 심의대상기사 아시아뉴스통신 2025년 2월 26일자 사회/사건/사고면 「조덕호 아산시장 예비후보, 26일 개소식 열어...“아산에 새 미래 가져올 것”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충청남도 아산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연설문 등 후보자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3.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 정

-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2
- 언 론 사 주식회사 열린미디어그룹(열린뉴스통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1127호
대표이사 조성원
- 심의대상기사 열린뉴스통신 2025년 2월 27일자 세종/충청면 「“조덕호 아산시장 예비후보
성황리에 개소식 가져”」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충청남도 아산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연설문 등 후보자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함으
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
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3.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3

언 론 사 국제뉴스(국제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가락동)
대표이사 김영규

심의대상기사 1. 국제뉴스 2025년 2월 10일자 대구면 「황태성 민주당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행」 제하의 기사
2. 국제뉴스 2025년 2월 19일자 대구면 「황태성 김천시장 재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민들 만나 지지 호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경상북도 김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반복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3.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결 정

-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4
- 언 론 사 펜과오늘 주식회사(시사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E타워 902호
대표이사 정하균
- 심의대상기사 시사오늘 2025년 2월 28일자 63~65면 「이강산 “좌파 세력 독점으로 망가진 구로, 반드시 살려낼 것”」 제하의 인터뷰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포부 및 공약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3.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인터뷰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옹호 또는 비하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5

언 론 사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일요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6층
대표이사 고재구

심의대상기사 1. 일요서울 2025년 2월 3일자 45면 「“창의적·실천적 정책으로 김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 제하의 인터뷰 기사
2. 일요서울 2025년 2월 17일자 47면 「이창재 김천시장재선거 예비후보 “김천사랑화폐 월 한도 확대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경상북도 김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포부 및 공약 등을 담은 인터뷰 및 관련 기사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3.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써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인터뷰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옹호 또는 비하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